

#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15층 2개동 총 128세대
- 공급 개요

주택형 (약식표기)	총 세대수 (일반분양)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54	7세대	54.8244	18.6403	73.4647
59B	4세대	59.9935	21.5428	81.5363
60	8세대	60.7403	20.9921	81.7324
84A	2세대	84.9888	27.4735	112.4623
84B	7세대	84.9933	27.4744	112.4677
84C	11세대	84.9894	27.8859	112.8753
합계	<b>39세대</b>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약식표기)	54		60		84B		84C		합계	
구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	-	1	(5)	-	-	-	-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1	(5)	-	-	1	(5)
장애인	경기도		1	(5)	-	-	-	-	1	(5)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1	(5)	1	(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예비추천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0%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예비입주자입니다.

※ 상기 내용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10.(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분양홈페이지 게시
홍보관 오픈	2026.07.17.(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2 상가동103호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7.20.(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청약접수 가능
당첨자 발표	2026.07.28.(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applyhome.co.kr) 개별 조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 사업주체에게 추천한 자

- 기관추천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요건

추천 대상	입주자 저축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

-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부천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입니다.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예정)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유의 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청약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소명 불가시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안내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및 분양 일정은 예정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대표번호(☎ 032-613-2355)로 문의 바랍니다.